'친환경적 데이터 응용기술 활용방안 연구' 제1차 포럼 (2019. 9. 24)

증거기반정책: 이론과 실제

윤 건(한국행정연구원)

목차

- I. 증거기반정책의 이론적 논의
- Ⅱ. 주요국의 증거기반정책
- 皿. 증거기반정책 국내사례 1: 통계기반정책평가
- IV. 증거기반정책 국내사례 2: 데이터기반행정
- V. 증거기반정책의 미래

증거 반정책 이론적 논의

증거기반정책이란 무엇인가?

증거기반정책은 정책개발과 집행의 핵심에서 연구를 통해 최상의 이용가능한 증거들을 도출해 냄으로써 정책과 프로젝트 또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사람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접근(Davies, 1999)

증거기반정책은 고도의 정책성과, 정부영역에서 합리성과 객관성의 부활, 정책을 위해 확증된 평가방법론의 개발 및 적용, 정책 신뢰성 높이는 제도적 장치 보급, 시민의 긍정적 의견형성 수단, 예산절감 및 정책창안의 기회 제공, 서비스 제공 기관의 책임성 고양 등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윤광석, 2016)

'증거기반(evidence-based)' 개념은 의학분야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현재 임상심리학, 사회복지학, 경찰학, 교육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사용

• 의료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증거기반실천(evidence-based practice)', 경찰 분야에서는 '정보기반 경찰활동(intelligence-led policing)' 개념 발전

증거기반정책이란 무엇인가?

| 구분 | 내용 |
|-----------|--|
| 의견/이익기반정책 | 가장 지배적인 멘탈구조에서 생산된 의견이나 이익에 따라 결정 |
| | 결정하는 행위자의 의도에 맞게 이미 증거가 제시되고 결정의 정당화를 위해 증거의 내용들이 주장되는 것 |
| 증거기반정책 | 엄밀성과 포괄성을 가진 증거들이 상호 경쟁하고 소통하는 가운데 정책결정이 이루 어짐 |
| 증거영향정책 | 불확실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이에 따라 증거의 질적 수준이 제한되는 상황의 의 사결정. 증거가 채우지 못하는 공간에 다른 이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속에서 구조화되 고 창조적으로 구성된 판단이 이를 채움 |

출처: 최영준 외(2016: 251-253)

증거의 유형

| 정책증거의 유형 | 연구증거의 유형 |
|---------------------------------|-------------------------------------|
| -systemic reviews | -impact evidence |
| -single studies | -implementation evidence |
| -pilot studies and case studies | -descriptive analytical evidence |
| -expert's evidence | -public attitudes and understanding |
| -internet evidence | -statistical modelling |
| | -economic evidence |
| | -ethical evidence |

출처: Davies(2004)

증거의 위계(hierarchy of evidence)

| Bagshaw and Bellomo(2008: 2) | Petticrew and Roberts(2003: 527) |
|---|--------------------------------------|
| |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es |
| Level I : <u>RCT(Randomized Control Trial)</u> 가 적절히 적용된 연구 | RCTs with definitive results |
| Level Ⅱ: RCT가 낮은 수준에서 적용된 연구 | RCTs with non-definitive results |
| LevelⅢ: 임의화되지 않은 관찰 연구 | cohort studies |
| Level IV: 임의화되지 않았으나 시간적으로 통제된 연구 | case control studies |
| Level V:통제가 없는 사례 연구 | cross-sectional surveys |
| | case reports |

출처: Nutley et al. (2013: 10)

정책과정에 증거가 왜 중요한가?

정책과정은 정책의 설계(수립)와 집행, 평가 및 환류로 구성됨

각각의 정책과정은 의사결정의 과정으로서 정책적 의사결정은 크게 두 가지 철학에 기초함

- 규범주의 철학: 가치나 이념과 같은 형이상학적 규범에 의한 결정
- 실증주의 철학: 구체적인 실증적 증거에 의한 결정

규범주의에 기초한 의사결정의 문제

- 규범주의적 의사결정에서는 구체적인 이유나 증거가 크게 중요하지 않음
- 대표적인 것은 윤리적 의사결정, 정치적 의사결정
- 정보공개는 민주 정부가 지향해야 하는 투명성 가치를 증진시키므로 당연히 해야 하는 것
- 의사결정이 부정적 결과(예를 들어 정책실패)를 가져오더라도 이는 고려 대상이 아님

실증주의적 의사결정은 결과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

- 모든 정책적 의사결정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함
- 실증적 증거는 의사결정에 합리적 정당성을 부여함
- 대표적인 것이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성분석
- 미래가치의 현재화를 통해 미래 발생 가능한 비용과 편익을 계산하여 비용편익비에 근거하여 의사결정

증거에 기초한 의사결정이 성공을 담 보하는가?

때로는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이 불가피하거나 혹은 보다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함

•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증거가 없는 경우, 케인즈의 animal spirit(주식이나 복권 당첨)

불완전한 증거에 의한 결정이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

• 완벽한 증거를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증거에 의한 의사결정은 근본적 한계

증거에 기초한 결정은 의사결정의 실패 확률을 낮추는 것

- ◎ 의사결정은 미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확률에 근거하는 것이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시킴
- 확률적 결정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을 수는 없지만 최소화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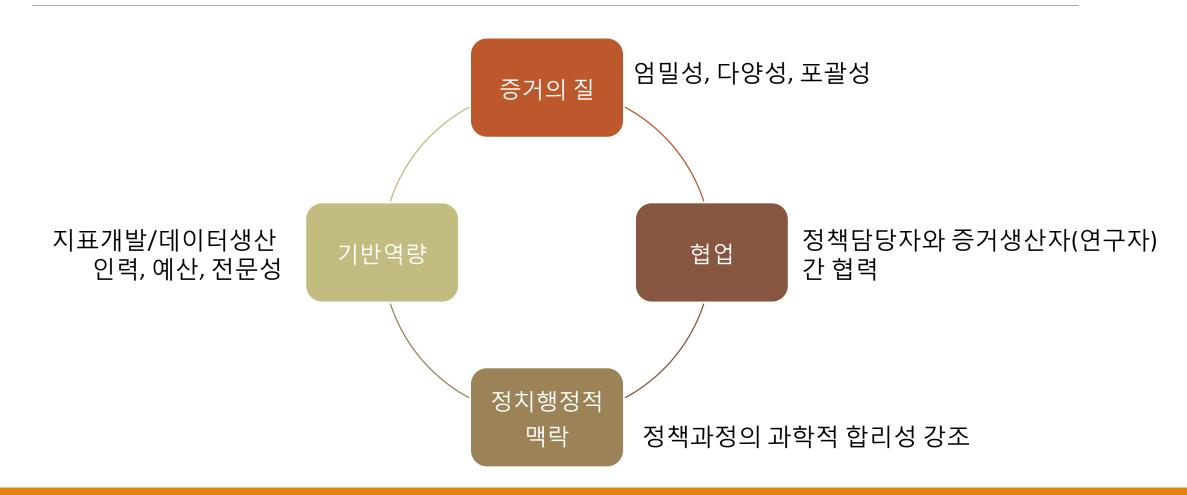
민주적 의사결정에서 적절한 증거는 소통 및 설득의 수단

- 물론 이 경우에도 상반된 증거가 제시되거나 증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사례

증거기반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님

- 정책실패의 확률을 낮추는 노력
- 증거기반정책의 실현과정에서 정책의 성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고민
- 증거기반정책의 유용성은 증거 자체보다 증거를 발견하려는 과정에서 찾아야 할 것
- 규범이나 직관적 요소가 보완적으로 활용될 필요
-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직관에 의한 의사결정이 주가 되겠지만, 이 경우에도 최대한 유사한 증거를 찾거나 빠른 증거 생성 필요
- 빠른 증거 생성시에는 증거의 질이 낮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의사결정 필요

증거기반정책 성공을 위한 주요변수



증거의 질(quality of evidence)

| 출처 | 구분 | 내용 |
|----------------------|---|---|
| | 엄밀성(rigorousness) | 제안된 정책이 의도된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증거가 <i>체계적으로 분석</i> 되었는지 |
| Nutley et al. (2013) | 포괄성(comprehensiveness) | 정책결정이 올바른지에 대한 답을 얼마나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결정에 도움이 되는 <i>정보가 충분하게 제공되는지</i> |
| | 엄밀성(rigor) | 평가결과의 정확성과 질은 기초연구의 설계와 실행에 의존. 모든 유형의 평가는 <i>가장 엄밀</i> 한 방법론과 가장 적절한 평가 유형 활용해야 |
| | 적실성(relevance) | 현실적용성. 증거가 예산,관리,정책결정에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는가 |
| US OMB(2016: 71-74) | 신뢰성 및 독립성 (credibility and independence) | 평가부서와 그들의 작업이 정치나 외부 영향으로부터 독립되어 있는지 |
| | 투명성(transparency) | 평가행위가 투명한지, 평가 작업과 결과가 공개되는지 |
| | 윤리성(ethics) | 평가가 윤리적으로 수행되는지,참여자의 위엄과 권리 안전과 사생활 보호가 이루어지는지 |

기반역량

증거기반정책은 *증거를 생산하고 활용하는 행위재(또는 조직)의 높은 역량*이 필요함

증거를 생산하는 조직의 충분한 예산과 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해당 인력은 증거 생산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

• 전문성의 확보를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함

즐거를 활용하는 행위재 정책담당자) 역시 높은 수준의 역량을 확보해야 함

질 높은 증거 확보에 대한 깊은 관심, 정책에 필요한 증거의 확정, 증거 해석을 위한 일정 수준의 연구역량 등이 필요

정치행정적 맥락

정책과정에서 합리성을 중시하는 정치적 맥락 필요

협상과 타협의 원칙에 기초한 정치성이 강조되는 경우 과학적으로 마련된 합리적 증거를 확보 하는 문제 간과되기 쉬움

대표적인 정책결정이론으로서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이 미국에서 활용되는 과정을 보면 점증모 형에 기초한 의자결정의 한계로 합리모형 등장

◎ 합리모형의 한계가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합리모형의 기초 위에서 정치성이 보완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70년대 경제발전 과정에서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증거에 기초한 경제산업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이후 다른 정책 분야에 파급

- 환경영향평가(1977), 규제영향분석(1997), 예비타당성조사(1999), 성별영향분석평가(2005), 통계기반정 책평가(2007)
- 특히 민주화가 심화되면서 <u>설득과 합의를 위한 기반으로서 증거</u>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예)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 당만 우리나라는 *선진국 수준의 엄밀한 연구증거에 기초한 증거기반정책의 수행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 음

주요국의증거기반정책

영국은 1999년 블레어 정부의 정부개혁안으로 'Modernizing Government White Paper' 채택

- 광범위하고 장기적 계획으로 국민과 기업의 삶을 개선하고자 함
- 목표: 전략적 정책결정, 수요자 중심 공공서비스 공급, 공공서비스 고품질/효율화
- 정부가 단기적 압력에 단순하게 반응하기보다 증거에 근거하여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결정할 것을 제안
- 다양하고 까다로워지는 시민의 요구에 대응하려면 정부가 혁신적일 필요, 정책결정이 지속적 학습과 개선의 과정이어야 함
- 정책결정에서 증거와 분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기적인 정책목표 추구

| = | 구분 | 내용 |
|-------------------------|--------|---|
| WWN(What Works Network) | 기능 | -기존 증거를 통해 정책 프로그램 및 관행의 효과성 검토 -각 분야에서 보고서 및 평가서 작성 -기존에 합의된 정책 및 관행의 성과 평가 -증거와 분석 결과를 공유 -정책결정자, 위원회, 실무자들이 분석한 결과를 의사결정에 활용토록 권고 |
| | 거버넌스구조 | 7개 독립기관(국립보건임상연구원, 서트트러스트/교육기금재단, 경찰대학 범죄예방센터, 조기개입재단, 지역경제성장센터, 고령화센터, 웰빙센터), 2개 준회원(웨일즈공공정책연구소, 스코틀랜드센터) |
| ADRN(Administr | 기능 | -정부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경제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단일 액세스 지점 제공 |
| ative Data Resea | | -연구자 자격과 능력 확인, 프라이버시 문제 해결 |
| rch Network) | 거버넌스구조 | 행정데이터서비스원(데이터 질 관리), 행정데이터연구센터(사우스햄프턴/퀸스(벨파스트)/에디버러/스완지대학), 국가통계기관(행정데이터연구센터와 협력),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행정데이터 제공), 경제사회연구회(기금 제공), 영국통계청(ADRN위원회 주도) |

지역경제성장센터는 증거 검토, 역량 강화, 시범 사업 등을 실시

- 증거 검토는 기존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개하는 것
- 역량 강화는 정책입안자나 지역경제 파트너에게 증거를 제공하고 워크숍 등을 개최함으로써 역량을 강화시키는 것
- 시범사업은 프로그램의 비용편익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

| 구분 | 내용 |
|-------|---|
| 증거검토 | 경제개발정책 관련 기존 증거자료 검토 지역경제 성장 요인(고용훈련, 비즈니스 자문, 문화행사, 금융프로그램) 조사하여 데이터 구축하고 공개 |
| 역량 강화 | 정책입안자 및 지역경제 파트너에게 분석 및 증거 제공, 워크숍 실시 |
| 시범사업 | 지역파트너, 지방정부와 공동으로 프로그램의 B/C에 대한 증거 제시 위해 시범사업 설계 및 실시, 자문 |

미국은 사회 실험(social experiment)을 정책평가의 방법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정책의 보다 정확한 효과 평가를 위해 정책대상의 무작위 배정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엄격한 구분 등, 실험적 방법 중시

2013년 7월 오바마정부에서 OMB(Office of Management an Budget), DPC(Domestic Policy Council), OSTP(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CEA(Council of Economic Advisers) 공동으로 "Next Steps in the Evidence and Innovation Agenda" 발표

| | 구분 | 내용 |
|--|---------------|---|
| | | 정부 기관이나 연구자가 정책(프로그램) 결과 관련 데이터에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특 히 연방정부의 보조금 프로그램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행정정보 활용 권장 및 데이터 개방 추진 |
| | | 행정정보 활용을 통해 정책평가 비용을 절감하고 평가 질과 적실성을 제고, 무작위실험이나 준 실험 방법을 적용하여 정책 효과 측정 권장 |
| | 성과 위주의 보조금 설계 | 공공서비스를 혁신하고 효과적 보조금 제도 설계 위해 증거 활용 |
| | 증거 활용 역량 강화 | 정책결정권자와 실무자가 지식 공유를 통해 기관의 증거 활용 역량 제고 증거의 질을 평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분석틀 개발 |

Evidence-Based Policymaking Commission Act

2014년에 제정되어 2016년 5월 수정한 법으로서 증거기반정책결정위원회 설치 근거가 되며, 통계기관, 연방평가국, 연방 증거구축사무국 활용하도록 규정

| 구분 | 증거기반정책결정위원회 내용 |
|--------|--|
| | -연방정부의 정책결정과 프로그램 평가 관련 행정정보와 서베이 데이터 확인하여 클리어링하우스에 등록 |
| | -데이터 간 연계성 판단 및 연결 상 법적/행정적 장애 요인 파악 |
| | -데이터 접근 및 연계 용이하도록 인프라 구축 |
| 기능 | -클리어링하우스의 자체자금 지원법 모색 |
| . 10 | -데이터 이용 적격자(연구자, 공무원, 기관) 판단 |
| | -데이터 이용 한계와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기밀 유지 방법 모색 |
| | -기관 간 정보 공유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설계 |
| | -연구결과 및 데이터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부처 자문 |
| | -전문가(경제/통계, 프로그램 평가, 정보보안/DB관리 등) 15인으로 구성 |
| 거버넌스구조 | -대통령과 의회의 임명 |
| | -위원 3/4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 |

증거기반정책결정위원회는 증거를 기초 증거(foundational evidence)와 정책 증거(policy-specific evidence)로 구분

증거 포트폴리오에 활용되는 데이터는 행정데이터와 서베이데이터로 구분되고, 행정데이터는 일반행정 데이터와 프로그램별 데이터로 서베이데이터는 일반목적 서베이와 연구별 서베이로 구분

- 일반행정 데이터는 국세청 납세 데이터와 같이 인구에 대한 포괄적 정보가 포함된 대규모 행정데 이터, 프로그램별 데이터는 특정 프로그램의 운영, 서비스 참여자, 서비스 성과지표 등에 대한 정 보 포함
- 일반목적 서베이는 연방통계시스템을 통해 수집되어 광범위한 인구 특성에 대한 정보 생성, 대규모 외단면/종단면/패널데이터 포함별 서베이는 특정 연구나 평가 관련하여 수집하는 데이터, 규모나 범위, 일관성 변화 크게 나타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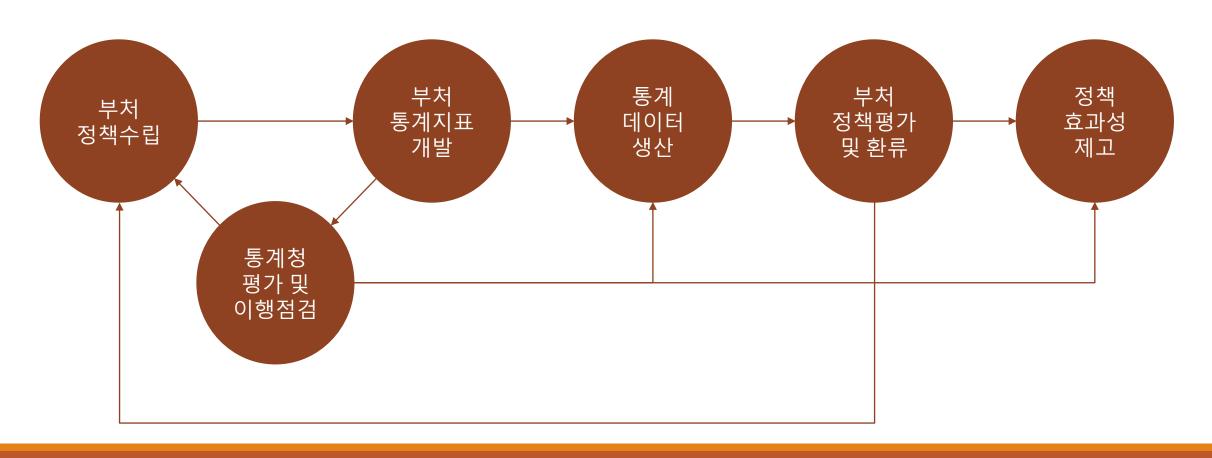
| 에시 실업 률 |
|--|
| |
| -경제, 건강, 실업 간 상관관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
| 계 -장기적으로 교육과 장애에 따라 실업률 격차 발생 |
| 경기침체가 저학력이나 장애근로자에게 큰 타격 |
| 정리해고나 공장폐쇄로 인한 실업자 연구에서 해고 근로자의 직무 기술이 업계에서 중 요 요소임을 제시 |
| 노동투자법 상 연방직업훈련프로그램의 고용-수입에 대한 공통성과측정지표 사용·참 여자 관리 데이터를 분기별 임금 데이터와 대조하여 지표 생성 |
| 혁신기회법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과 성과를 위한 다중 데이터 구현 및 분석에 초점 |
| 준실참여자 데이터와 임금 기록 분석 결과 다른 직업센터 참석자의 표본보다 더 높은 수입 과 고용기회 얻는 것으로 확인 |
| 참여자 데이터와 임금 기록 사용하여 실업보험 청구인에게 재취업 서비스 제공시 재취 실험 [,] 업 속도 증가와 실업보험 수혜감소 확인 |
| 노동부는 행정데이터로 비용효과의 장기 추적 관찰이 어떻게 가능한지 평가 |
| 분석,노동부는 견습생이 받는 수입과 순편익을 분석하기 위해 10개 주의 프로그램 효과 및 비용편익분석 실시 |
| |

증거기반정책국내사례 1: 통계기반정책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의의

| 시기 | 내용 |
|-----------------------------|---|
| | <i>사회통계 발전을 위한 국가통계혁신 계획</i> 中 |
| 2007년 6월 19일 | - 통계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수립 체계 확립을 위해 통계와 정책의 연계 강화 |
| | - 새로운 정책 및 제도 도입 시 정책입안-점검-평가의 단계별 통계 설계 의무화 |
| | <i>톨계법시행령</i> (대통령령 제20331호) 제33조 도입 |
| 200713 10 91 20 01 |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u>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u> 해당 법령을 통하여 도입되 |
| <u>2007</u> 년 10월 28일 | 는 정책과 제도의 집행·평가에 적합한 통계의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통계청장에게 요 |
| | 청하도록 함 |
| | <i>톨계법</i> (법률 제11553호) 제12조의 2 신설 |
| <u>2013</u> 년 3월 19일 | -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통계기반정책평가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 구속력을 제고함 |
| | 으로써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국가통계기반을 확충 |

통계기반정책평가의 과정



통계기반정책평가 관련 행위자 및 기능

통계청

통계기반 정책평가

이행점검

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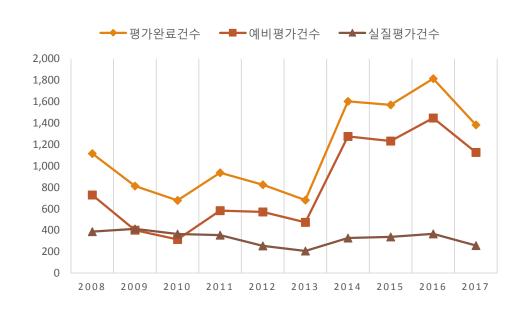
통계지표 초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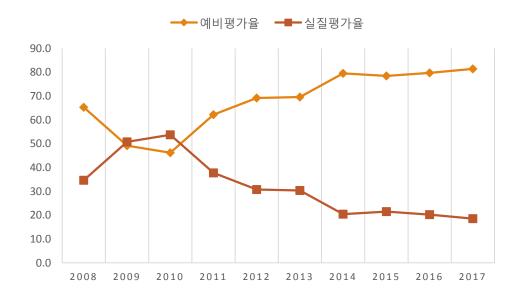
통계생산 계획 마련 연구기관

지표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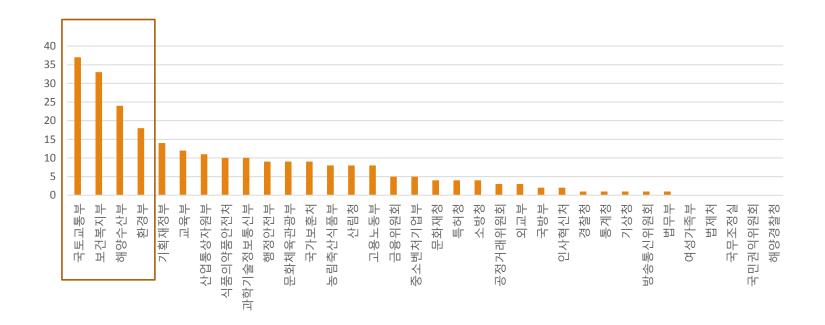
통계생산

통계기반정책평가 10년의 성과





통계기반정책평가 10년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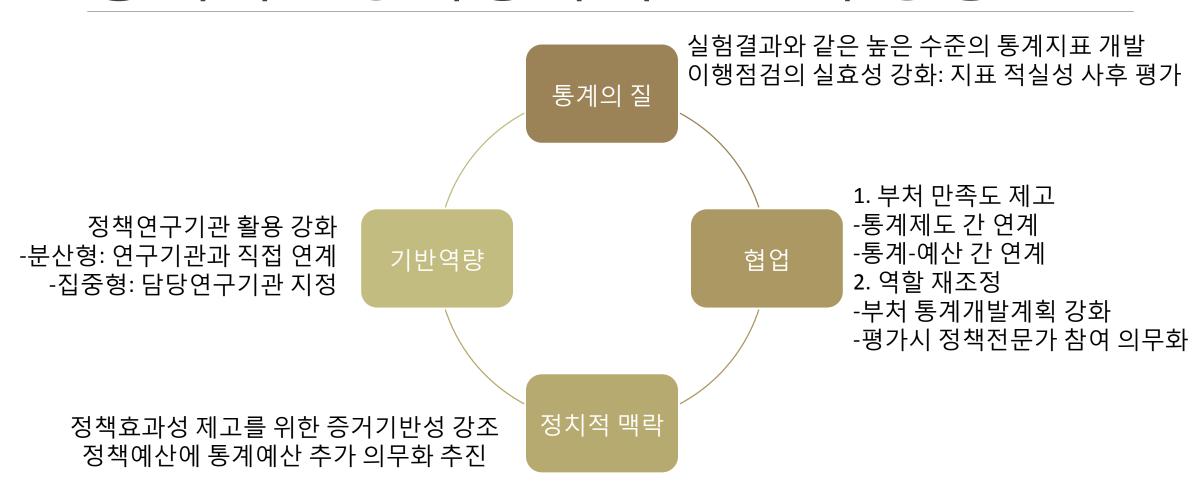


실질평가건수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문제

실험결과와 같은 높은 수준의 통계지표 미흡 평가조직의 통계역량 높음 정책 적실성, 다양성, 포괄성 등 검토 필요 통계의 질 평가조직의 정책역량 낮음(특히 순환보직) 이행 점검의 실효성 강화 필요 평가조직의 인력 규모 낮음 연구기관 정책 및 통계역량 높음 부처 정책역량 높지만 통계역량 낮음 기반역량 협업 부처의 불만: 형식적 절차에 불과 통계예산, 통계승인 등과 분리 정치적 맥락 정책과정의 합리성 중요하지만 법제개정의 시간적 제약으로 현실화 수준 낮음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 변화 방향



증거기반정책국내사례 2: 데이터기반행정

우리나라에서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이 2017년 12월 국회에 제출됨

-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소관 법률안으로 현재 법사위 통과되어 연내 통과가 유력함
-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의,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체계, 데이터 등록 및 제공 절차, 데이터기반행정 기반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

데이터기반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 저장, 가공, 분석, 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 및 기본계획 수립

-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정책, 제도, 법령, 데이터 제공 거부 조정 등의 심의를 위해 행정안전부 소속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위원회 설치
- ∘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등록 및 제공 절차

-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하여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되지 아니한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데이터의 이용 목적, 분석 방법 등을 명시한 문서로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에 요청하도록 함.
- 다른 법률 등에서 비밀로 규정하거나 국가안전보장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공할 경우 국가의 중 대한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데이터 소관 공공기관은 데이터 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민간 법인 등에 소관 데이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데이터기반행정의 기반구축

- 공공기관의 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관계도를 관리하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의 메타데이터 등을 종합하여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유형별 저장 체계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분석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데이터분석 등을 통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통합데이터분석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의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점검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공 개하도록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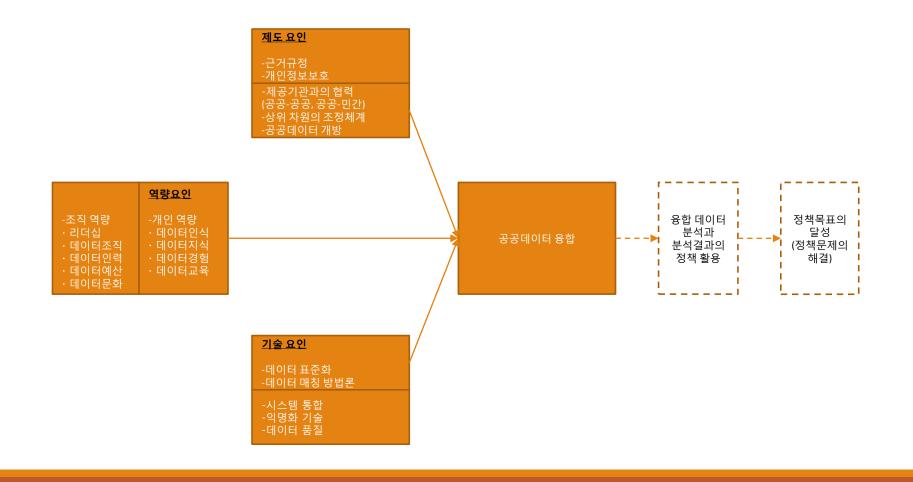
데이터기반행정에서 데이터의 의미

- 이 테이터기반행정법안에서는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도는 처리된 상태의 정보로서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성형의 모든 것"으로 정의
- 데이터기반행정이 논의되는 배경에는 4차산업혁명, 데이터 시대, 빅데이터 등의 발현과 관련됨
- 빅데이터의 정책적 활용이 이슈가 되지만 데이터기반행정의 관점에서는 스몰데이터도 중요함
- 정책적으로 활용성이 가장 높은 데이터가 통계데이터이고 통계데이터는 전형적인 정형데이터로 상대적으로 스몰데이터가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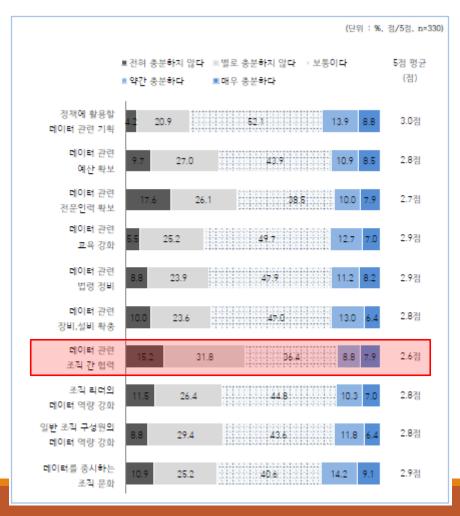
데이터기반행정과 증거기반정책 간 관계

- 데이터기반행정에서 데이터는 정책적 의사결정의 증거로 활용됨
- 행정은 본래적으로 정책과정에서 정책집행의 의미를 갖지만, 이를 담당하는 행정부의 일로 이해하게 도면, 오늘날 행정부가 정책집행뿐만 아니라 정책결정에도 깊숙히 관여하므로 행정과 정책 간 차이는 크지 않음
- 데이터기반행정법안에서도 데이터기반행정을 정책적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정의하고 있으므로 데이터 기반행정과 증거기반정책의 의미는 본질적으로 같다고 보아야 함
- 다만 데이터에 비해 증거 개념이 보다 의사결정 활용이 예측되는 측면이 있으며, 데이터기반행정은 데이터 시대의 행정을 반영하는 측면, 증거기반정책은 정책적 의사결정의 합리화를 강조하는 측면이 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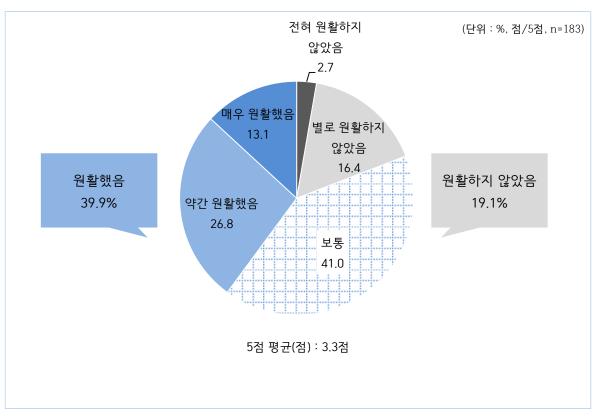
데이터기반행정의제약조건



데이터기반행정의제약조건



^{*}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항목들이 현재 어느 정도 충분히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 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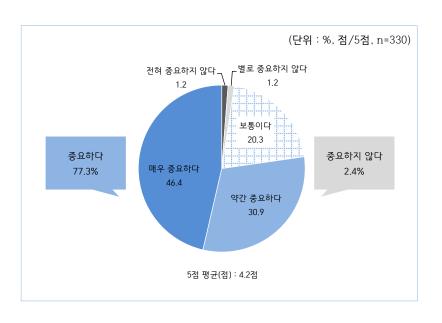
^{*} 타 기관의 데이터 이용 시 데이터 제공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졌습니까?

데이터기반행정 중요성 인식



* 귀하께서는 정부 공무원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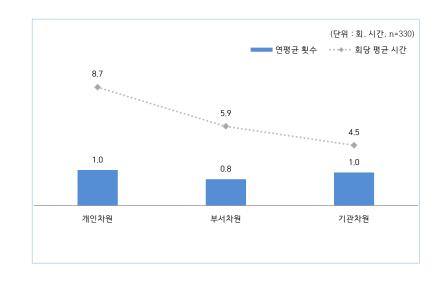
공공데이터 융합 중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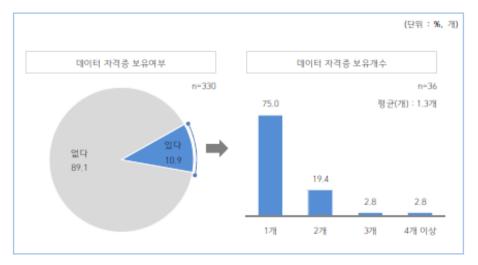


* 귀하께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 강화를 위해 공공데이터 융합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데이터교육

데이터 자격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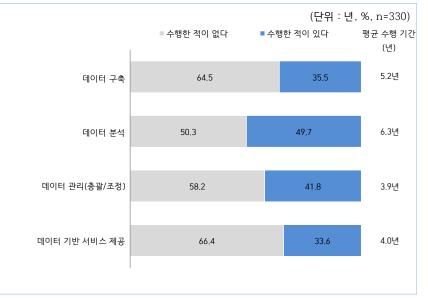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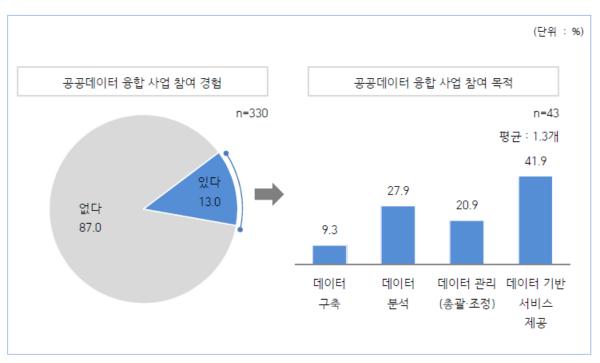


현재 업무 경험

과거 업무 경험







^{*} 귀하께서는 공공데이터 융합이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습니까?

증거기반정책의 미래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방향성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는 정부의 증거기반정책을 강화함으로써 정책의 합리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재의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가 증거기반정책의 관점에서 그 취지를 더 잘 살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법령 심사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 법령 심사의 경우 짧은 정책 시계로 인해 충분한 검토가 용이하지 않음
- 정책의 집행을 모니터링하고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적실성 있는 지표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평가를 위한 사후 심사가 추가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음

 현재 이행점검을 확대하여 기존의 이행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활용이나 개발/개선 권고된 지표의 정책적 적실성 검토가 필요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의 방향성

- 이 경우 정책적실성이 높은 통계지표를 확정하기 위해 몇 가지 추가적 검토가 필요함
- 첫째,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실효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현재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기초한 정부 업무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정부업무평가는 부처의 성과관리시행계획상에 정량지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해당 정량지표의 통계적 적절성 여부에 대한 사후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둘째, 통계기반정책평가의 경우 현재 시행규칙까지 검토하고 있으나, 부처의 기본계획에 대한 검토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실제 부처의 기본계획 검토를 통해 통계기반정책평가에서 권고된 통계지표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점검 필요
- 셋째, 통계청 내부 정책지표 개발 관련 기능과의 적극적 협업 필요
 - 예를 들어 통계개발원의 신규 통계 개발 기능은 적실한 정책지표 확정에 도움을 줄 것임
- 넷째, 행정안전부와 연계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통계기반성 검토 필요
 - 오늘날 중앙정부의 정책은 지방정부 정책과의 연계성이 강화되고 있으므로 보다 적실한 정책지표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 치단체의 통계기반성 검토 필요

데이터기반행정의 방향성: 데이터법

데이터 최상위법이 필요한가?

- 기존 법령이 가지는 목적의 한계:
 - 국가정보화기본법: 정부와 민간을 아우르는 국가정보화
 - 전자정부법: 정부 정책의 전과정을 IT 기반으로
 - 공공데이터법: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제공에 초점
 - 콘텐츠산업법: 문화산업 관점
 - 데이터기반행정법(안): 공공데이터의 정책적 활용에 초점
 - 통계법: 통계데이터에 한정

데이터 최상위법 제정의 접근 전략

- 관할 데이터: 공공데이터 vs 민간데이터
- 포괄 범위: 데이터 생성-관리-서비스
- 데이터의 활용 목적: 정책적 활용 vs 산업적 활용
- 법령 제정 방식: 기존 법령의 전부개정 vs 새롭게 제정
- 관할 내용: 기본계획, 최상위 총괄조정체계, 전문인력, 교육, 표준화, 기술개발, ...

데이터기반행정의 방향성: 데이터 거버넌스

고려사항

- 어버넌스의 중첩: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통계위원회, 4차산업위원회, ... → 기존 거버넌스 활용 vs 데이터 관련 최상위 조정기구 신설
- 거버넌스의 구조: 통합형 vs 분산형
- 거버넌스의 위상: 대통령 vs 국무총리 vs 부처청
- 거버넌스의 범위: 국가 vs 지방자치단체
- 거버넌스의 참여주체: 데이터 관련 부처청-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국책연구기관-대학-시민단체
 - ∘ 부처청: 총괄·조정기관(행안부, 과기부, 통계청) vs 정책분야별 데이터보유기관(복지부, 고용부, 국세청, ...)
 - 공공기관: 분야별 데이터 보유 기관(심평원, 각종 정보원, ...)
 - 국책연구기관/대학: 심도깊은 정책분석 서비스 제공
 - 시민단체: 정책문제의 당사자, 개인정보보호, 감시자, ...
- ∘ 거버넌스의 기능: 총괄·기획 vs 심의·조정 vs 분석·서비스
- 기관 내부 데이터 거버넌스의 문제: 정보화 부서 vs 통계 부서 vs 사업 부서

데이터기반행정의 방향성: 데이터 거버넌스

데이터 거버넌스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를 확정해야 할 것

- 공공데이터의 융합은 정책활용의 관점에서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측면이 강조된다면 단순한 심의 조정 기능에 한정되기는 어려움
- 더욱이 미래를 대비하는 행정체계로 논의되는 미래예견적 거버넌스에서 데이터기반행정이 핵심 이라고 하면 데이터거버넌스의 기능은 더욱 확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임

데이터기반행정의 방향성: 데이터 분 석센터

현재의 데이터분석센터는 데이터보유주체의 관점에서 데이터활용성 강화 측면에서 접근 되고 있음

- 그러나 데이터분석센터는 데이터거버넌스라는 보다 거시적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데이터분석센터는 단기적으로 기관 간 데이터 협력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음

데이터분석은 정책문제 해결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가능하게 하는 중간 수준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음

데이터 융합이 데이터분석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만 정책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음

데이터기반행정의 방향성: 데이터 분 석센터

정책문제 해결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데이터분석의 주된 주체는 정책분석가가 되어야 할 것

정책분석가는 정책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러한 데이터를 찾기 위한 열정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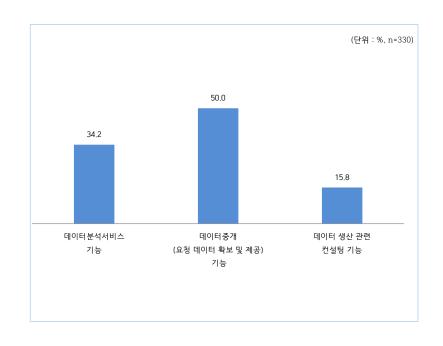
데이터접근성이 낮은 상황에서 데이터분석센터는 정책결정자의 데이터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 정책분석가 채용을 통해 정책결정자의 정책을 직접 지원하는 역할, 외부 정책분석가의 데이터 접근성을 돕는 창구로서의 역할을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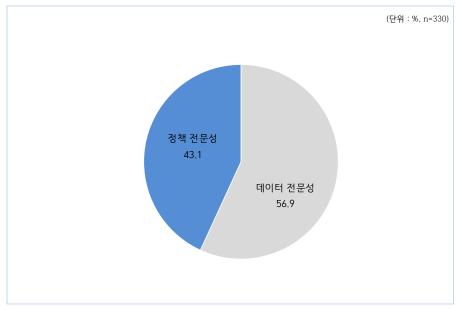
 데이터 접근성 관점에서 보면 현재 다양한 데이터분석센터 간 연계를 활성화하여 센터 간 데이터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

데이터기반행정의 방향성: 데이터 분석센터

수행해야 할 기능

분석가의 전문성





감사합니다!